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일러두기

안내서 개발 목적

- 이 안내서는 균형인사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간추려 제시한 안내서로,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근무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내서 개발 근거 및 주요 내용

- 이 안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제52조 및 같은 법에 따른 「균형인사지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교원의 이해,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부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내서 활용 방법

-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행 장애인교원 관련 법령과 본 안내서, 시·도 교육청 인사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교육청 : 장애인교원 업무 담당자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 인사관리, 편의제공, 고충상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 자료로 활용
  - 각급학교 : 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및 학교장이 학교 차원의 장애인교원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 자료로 활용
  - 장애인교원 : 장애인교원이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받거나 신청·요구할 수 있는 인사관리, 편의지원, 업무 수행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자료로 활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01

장애인교원의 이해

1. 장애인교원의 개념 6
2. 장애인교원의 구분 9
1) 장애정도 9
2) 장애유형 11

0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고려 사항 24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기본 방향 및 고려 사항 24
2) 개인정보보호 26
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31
1) 신규 임용 32
2) 전보 임용 34
3) 승진 임용 40
4) 기타 인사 관리 등 43
3. 장애인교원 업무분장 등 46
1) 업무분장 등에서의 고려 사항 46
2) 주요 업무별 고려 사항 48

CONTENTS

0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1. 편의지원의 개념 52
2. 편의지원 주요 내용 56
1) 인적지원 56
2) 의사소통 지원 64
3) 보조공학기기 지원 66
4) 정보접근 지원 76
5) 편의시설 지원 82
6) 근무환경 개선 지원 89
7)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92
8)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92

04

부록

〈부록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98
〈부록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113
〈부록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23

0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장애인교원의 이해

1. 장애인교원의 개념
2. 장애인교원의 구분

01 장애인 교원의 개념

장애인교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을 말함

장애인교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국립 · 공립 · 사립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 · 도교육청 또는 직속 · 부설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장 · 교(원)감 · 수석교사 · 교사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거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을 말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서 장애인을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 관련 내용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관련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관련 내용

▸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당한 교원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도 장애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관련 내용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교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교원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

※ 2023년(2022년 12월말 기준) 현재, 전체 장애인교원 4,579명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은 4,348(95.0%)명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교원은 231명(5.0%)임

02 장애인교원의 구분

장애인교원에 대한 특성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교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1) 장애정도

장애인교원의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중증장애)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장애)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산정과 신고를 해야 하거나 이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등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중증장애인교원과 경증장애인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에 대한 기준

<table>
<tr><th colspan="2">「장애인복지법」</th><th rowspan="2"></th><th colspan="3" rowspan="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th></tr>
<tr><th>장애유형</th><th>장애정도</th></tr>
<tr><td></td><td></td><td></td><td>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td><td>→</td><td rowspan="2">중증장애</td></tr>
<tr><td>지체(상지 절단장애, 상지 관절장애, 상지기능장애),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심장, 호흡기, 뇌전증</td><td rowspan="2">심한장애*
(기존 1급, 2급, 3급 장애)</td><td></td><td colspan="2">→</td></tr>
<tr><td>지체장애(상지 제외),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 · 요루, 신장</td><td></td><td rowspan="2">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 해당 여부 확인</td><td>해당 →</td><td rowspan="2">경증장애</td></tr>
<tr><td>모든 장애유형</td><td>심하지 않는 장애
(기존 4급, 5급, 6급)</td><td></td><td>미해당 →</td></tr>
</tabl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의 구체적 차이는 부록 내용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말함(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말함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별표1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말함(구체적 내용은 부록 참고)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른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정도 구분은 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교원 중 장애로 인하여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나 기존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각 시 ·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 중 장애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하거나 강도가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일부 시 · 도교육청에서는「장애인복지법」또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장애*를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대상자 기준 등으로 포함시켜 보행의 어려움이 있는 교원에 대해 인사관리상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상장애로 판정되는 사람을 의미(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부록 참고)

2022년(12월 기준) 현재, 전체 장애인교원 4,579명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교원은 643명임(전체의 14.0%)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교원 중 중증장애인교원은 경증장애인교원보다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2월, 17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 장애인교원 634명 대상 직무 수행 실태 및 요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교원의 주요 직무별 장애인교원의 어려움 인식 정도 및 도움 필요 정도에 관한 조사 실시 결과, 중증장애인교원 평균 2.78점, 경증장애인교원 평균 1.87점으로 중증장애인교원이 경증장애인교원보다 1.5배 수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장 체험학습 등 비교과 활동 운영 · 참여" 직무(중증장애인교원 3.58점, 경증장애인교원 2.36점), "등하교 · 식사 등 학교 생활 지도" 직무(중증장애인교원 3.13점, 경증장애인교원 1.93점) 등 학생 지도와 관련된 직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교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겪는 차별 경험은 "업무 또는 보직 배정 관련 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증장애인교원(27%)이 경증장애인교원(8.6%)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교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 중증장애인공무원 등을 위한 인적지원, 물적지원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각 시 · 도교육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인사관리기준 개선 또는 별도의 편의지원 계획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교원의 교원으로서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 장애유형

장애인교원의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로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세분화 됨

외부신체기능장애의 하위 장애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안면장애가 있으며, 내부기관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간, 장루 · 요루, 뇌전증이 있음.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뉨

〈그림〉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간	장루 · 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 전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 44.3%, 청각장애 16.0%,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3%, 지적장애 8.5% 순이나, 장애인교원의 경우 지체장애 57.4%, 시각장애 24.4%, 청각장애 6.9%, 뇌병변장애 4.0% 순으로 차이 존재(2022년 12월 기준)

- 장애인교원의 92.8%가 지체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임

〈그림〉 전체 장애인과 장애인교원의 장애유형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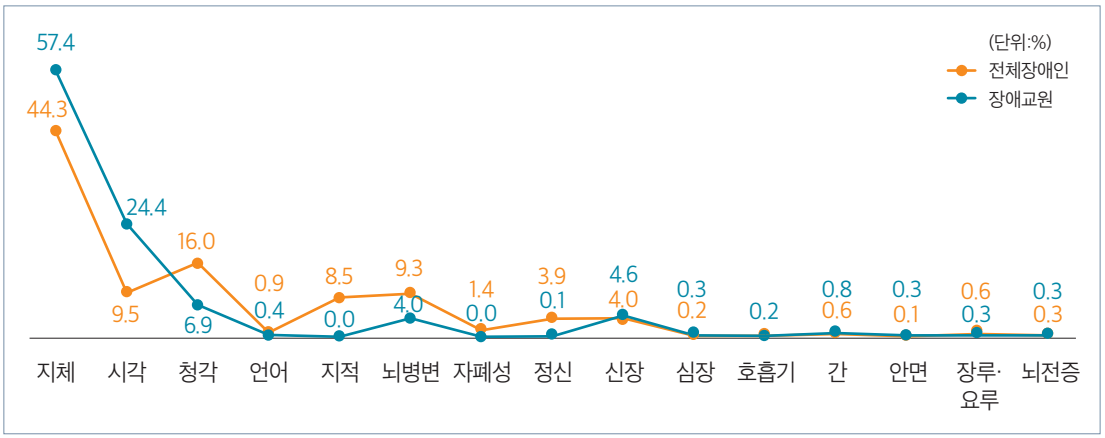

- 장애인교원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인사관리 및 편의지원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장애정도, 성, 근무지 환경, 교직 수행 경험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교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교원 중 중증장애인교원은 경증장애인교원보다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 더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지체장애

장애특성

- 절단,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가진 경우를 말함
- 손, 팔 또는 다리의 움직임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이동수단 지원 등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제공되면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음

고려 사항

-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을 사용자 허락없이 만지거나 옮겨서는 안 됨
- 보조공학기기 외에 개인별로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전용 주차장·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이동 동선 고려하여 좌석/책상을 배치하거나 적절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출입문과 복도 사이의 턱(단차)이나 계단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회의나 외부활동 준비 시 장애인의 접근성 고려 필요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음
- 장애가 있다고 하여 체육 활동 등의 참여, 진행 등을 제한, 배제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 또는 이동과 신체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엘리베이터 또는 장애인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휠체어 전용 책상 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 지원인력,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이동동선 고려 근무 공간 배치, 주차공간 지원 등)

(2) 뇌병변장애

장애특성

- 뇌병변장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를 가진 경우를 말함
- 운동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편의지원이 제공될 경우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고려 사항

- 최대한 천천히 이야기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의사소통을 해야 함
- 신체 활동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 등 이동 또는 신체활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엘리베이터 · 장애인화장실 ·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등 편의시설, 휠체어 전용 책상 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지원
- 지원인력,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 의사소통 조력 지원
- 시험(평가) 시 시험(평가) 시간 연장 지원 또는 대필지원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이동동선 고려 근무 공간 배치, 주차공간 지원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학교통신망 등에 대한 웹접근성 지원
- 출퇴근, 재활, 치료 등에 따른 이동 및 휴식 지원

(3) 시각장애

장애특성

- 시각장애는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나쁘거나 시야가 일정 각도 이하로 좁은 경우를 말함
- 시각장애인 중에는 전맹(시력이 전혀 없는 경우)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잔존 시력이 있거나 명암이나 형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상당수 있음
-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무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고려 사항

- 목소리로 상대방을 파악하므로, 인사와 대화 시작 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어야 함
- 이동시 도움이 필요한 지 먼저 묻는 것이 좋으며, 길을 안내할 때에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주변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함(예, 오른쪽으로 5m간 다음, 왼쪽으로 돌아서 1m 가세요.)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흰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필요시 본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함
- 의자에 앉을 때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주어 확인하고 앉도록 도와줄 것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로 함부로 만지지 말고, 안내견 출입을 금하지 말 것. 안내견의 덩치가 커도 잘 훈련된 개로 위험하지 않음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점자 자료, 큰 글자 자료 또는 텍스트파일로 제작된 자료와 함께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 텍스트 자료에 대한 음성 변환 지원,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화면해설 자료 제공
- 지원인력,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
- 시험(평가) 시 대필 또는 시험시간 연장 지원, 근무환경 지원(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 휴식공간 제공 등), 교육행정정보통신망 또는 학교통신망 등에 대한 웹접근성 지원

(4) 청각장애

장애특성

- 청각장애는 귀의 청력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청력을 상실했거나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전화를 통한 응대 등 업무특성 상 직접 청취 작업이 필수적이거나 고도의 청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고려 사항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사소통수단을 파악하여 의사소통 진행(메모, 핸드폰문자, 입모양, 보청기 등)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며,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함
-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업무를 지시하거나 공유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
-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알려주고 의견을 이야기할 시간 부여
- 회의 진행 이외에도 청각을 이용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상황 발생시(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소란스러운 상황 등), 해당 상황을 설명해 주는 등 관련 정보 제공
-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 마련
- 전화할 때 명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문장마다 끊어서 천천히 말하거나, 영상통화 또는 문자통역/수어통역 중계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속기)사 등 인적지원,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시험(평가) 등에서 필담 면접 허용
- 근무환경 지원(휴식 공간 제공, 방음을 고려한 환경 등)
- 교육행정정보통신망 또는 학교통신망 등에 대한 웹접근성 지원
- 교내 방송 등 음성 정보에 대한 시각적 대체 정보 제공

(5) 언어장애

장애특성

- 언어장애는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언어장애와 직무 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으므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함
- 언어장애인 역시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하며,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화,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음

고려 사항

-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화시 몸짓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고려
-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귀를 기울여야 함
-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문자, 팩스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원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 지원
- 지원인력, 근로지원인 등 인적지원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방음을 고려한 환경 지원 등)

(6) 안면장애

장애특성

-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안면장애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직무 수행 가능
- 장애를 입은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고려 사항

- 편하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도록 함
- 일상생활에서 외형이 다르다도 피하거나 빤히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함
- 음식점 등에서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거나 뜨거운 것을 잡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7) 신장장애

장애특성

-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장소에 대한 고려 필요
-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근무지 인근에 투석 가능 병원 필요
  ※ 평균 주 2~3회 투석을 하며 1회 투석 시 평균 4시간 가량 소요

고려 사항

- 충분한 투석시간 확보를 위해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
-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을 피함
- 격렬한 신체활동은 노폐물을 다량 발생시켜 체액량을 급격히 변화시키므로 유의하여야 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투석 등에 따른 이동 및 휴식 지원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8) 심장장애

장애특성

-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함
-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를 피하고 정기적인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

고려 사항

- 심장장애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피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9) 호흡기장애

장애특성

-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청정한 공기 등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중요함
- 이동이 많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직무는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음

고려 사항

- 냉·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날 수 있으며,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 물어보고 쉬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됨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공기청정기 설치 등)

(10) 간장애

장애특성

-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함
- 간장애가 안정된 경우라면 일상 활동이 가능하며, 개별 특성에 맞는 직무수행이 가능함
-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고려 사항

-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음
- 장애특성으로 인해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11) 장루 · 요루장애

장애특성

- 장루 · 요루장애는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함
- 광범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장애특성 상 화장실 사용이 빈번함을 고려

고려 사항

- 요루 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은 피하는 것이 좋음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시험/연수/평가 중 배변 · 배뇨 보조기구 교체를 위한 지원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12) 뇌전증장애

장애특성

-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함
-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
- 만약 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상태로 회복되므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높은 곳이나 위험한 기계 앞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대부분의 뇌전증장애인은 발작 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호흡곤란이나 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작 시 대처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

고려 사항

-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단추· 허리띠를 풀고 기도 유지를 해 주어야 함
-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음
-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력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유형

- 근무환경 지원(휴식공간 제공 등)

0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상 고려 사항
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3. 장애인교원 업무분장 등

0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고려 사항

1)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기본 방향 및 고려 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임용된 장애인교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관리상 우대받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6조의4, 제52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 등에 근거하여 균형인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균형인사지침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역인재, 이공계전공자, 사회통합형 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지원과 공직 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채용,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균형인사지침」 중 총칙 및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기본방향 주요 내용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 · 채용, 교육 · 배치, 승진, 전보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시 · 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 및 균형인사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안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고려 사항

- **[법정주의 기반]**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균형인사지침」,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책임행정 및 교육자치]** 시 ·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따르는 등 시 · 도교육청의 인사관리 자율성에 바탕을 두되, 장애인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반영
-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근무 환경 조성]** 장애인교원의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교원의 역량을 적재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상의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반영

▌시 ·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 ·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관련 법령 및 타 시 · 도 운영 사례와 장애인교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사관리기준 개정

- 인사관리기준협의회 등에 장애인교원 대표자 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교원의 실제 요구 및 지역사회 환경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시 · 도교육청은 각급학교가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업무분장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 ·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를 개발 · 보급하거나 별도의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의 인사관리, 편의지원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교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참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 · 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인교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또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애인교원에게 알려야 하고 동의도 받아야 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관련 조항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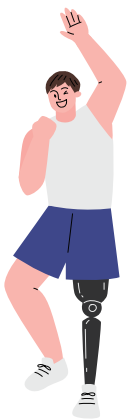

장애인교원에게 인사관리 또는 편의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장애인교원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조항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장애인교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장애인교원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특히 이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교원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관련 조항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원의 건강 또는 장애 등에 대한 민감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유출, 누설 등)를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정조치 및 벌칙 관련 조항

▸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Q&A

질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파악과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절차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 일까요?

답변

-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등록장애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등록일 등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 ·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 다만, 장애인교원의 장애특성을 확인하려 하거나 장애정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학적 검사를 채용 전에 추가로 실시하려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2조에 따른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등은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려거나 별도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 위반 여부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A

질문

장애인교원에 대한 장애유무에 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답변

- 장애인교원의 장애에 관한 정보는 질병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기관에서도 사실 확인으로 그치고, 그러한 정보가 인사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 건강관리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 등 업무상의 관계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것을 상사가 업무상의 관계자에게 전하는 것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만 그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원 내용을 크게 신규 임용, 전보 임용, 승진 임용 및 업무분장 등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지원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항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신규 임용	•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가급적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전보 임용	• 전보 임용 과정, 타 시 · 도 교환 · 교류 과정, 파견 대상자 또는 특별연수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함 • 장애인교원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시 · 도교육청의 여건 및 전보 유예 근거 등을 고려하여 현 근무지(근무 지역 또는 근무 학교 등)의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보유예를 실시할 수 있음 • 우선 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 · 도교육청의 전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 전보가산점을 추가 부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거나, 타 시 · 도 교류 또는 시 · 도 교환 · 파견 근무 시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
승진 임용	• 승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교원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장애인교원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항목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지원 내용
기타 인사 관리	• 교육전문직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교원이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교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하는 특별연수 실시 과정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교원이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음 • 각 시 ·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재활치료 등 장애 관련 사항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시 · 도교육청의 재량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도 가능함을 안내하여야 함
업무 분장 등	•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제공 등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교원이 대한 순회 또는 겸임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순회 및 겸임 기관에서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교원 중 순회 및 겸임 대상자 선정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이동 소요시간, 이동의 편의,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함

1)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일반 또는 별도전형)에서 합격한 교사를 관할 지역 근무지로 발령하는 것을 말함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신규 임용된 장애인교원을 학교 등 근무지로 발령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에 따라 가급적 장애인 교원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의 관련 내용

▸ 제3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① **임용권자**(임용제청 권자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장애 구분 모집에 의한 신규 장애인교원 및 장애 구분 모집이 아닌 일반 전형에 합격한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교원 당사자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인사상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장애인교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장애를 고려한 인사상의 조치 또는 편의지원 등을 관할 지역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각 시 · 도교육청은 신규임용 과정에서 본인이 장애인교원에 해당될 경우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를 요구(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적용 예시

-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희망 근무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
-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의 희망 근무지에 결원이 없어 배치가 어려운 경우 신규 교원 임지 대상 근무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선 배치

※ 신규 배치 후 거주지와 근무지 간 출 · 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무 중간에 현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비정기전보 특례 등을 적용하여 다음 정기인사 기간에 가까운 근무지에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조치

※ 희망 근무지가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여건(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배치 결정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수렴 또는 요청 사항 확인, 배치 가능 학교 파악, 담당자 협의 및 학교 배치 등 근무지 배치 단계에서 적절한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적용 사례

- 장애인교원의 희망에 따라 배치한 사례
  - OO년 3월, 신규 임용된 A장애인교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교원으로서, 경사로, 엘리베이터, 높이차가 없는 출입문,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하여 이러한 시설이 확보된 근무지로 배치해 줄 것을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였음. 해당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신규 발령 예정 학교의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의 편의시설 완비 정도가 A장애인교원에게 충분한지 확인하기 어려워 A장애인교원과 함께 해당 학교의 편의시설 환경을 함께 확인하고 근무 가능 여부를 파악하였음. 배정 대상 학교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로 2동의 건물 중 1동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건물 내 복도의 통로가 좁아 휠체어를 이용한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다시 파악하였고, 이중 A장애인교원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정하여 A장애인교원의 근무 가능 여부를 전화를 통해 재확인하였음. 새롭게 배정될 학교 역시 휴게 공간,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A장애인교원 배치시 이와 같은 시설, 설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하고, A장애인교원의 신규 임지 배정을 완료함

시 · 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장애인교원 배치시 장애인교원이 희망하는 편의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이러한 편의지원이 해당 근무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전보 임용

(1) 개요

전보 임용은「교육공무원법」제2조제9항에 따라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함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시 ·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임용권자는 장애인교원의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법령:「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8조(전보계획)의 관련 내용



▸ 제18조(전보계획) ① ~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보 임용 과정에서의 인사상 적극적 조치는 「국가공무원법」 및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른 임용권자의 적극적인 우대 정책 중 하나이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보 과정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임

※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임용의 원칙)의 관련 내용



▸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의 관련 내용

Ⅰ. ~ Ⅱ. (생략)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 · 채용, 교육 · 배치, 승진, 전보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중략)

4. 근무환경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 · 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 · 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의 관련 내용

▸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전보 과정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인교원은 고용 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사용자(교육감 등)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10조(차별금지)의 관련 내용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선 전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에 따라 장애인교원이 장애 등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기관 이용 등으로 근무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현재 근무지가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근무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의 관련 내용

▸ 제18조(전보계획) ① ~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의 관련 내용

Ⅰ. ~ Ⅱ. (생략)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중략)

4. 근무환경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 · 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 · 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적용 사례

- 희망 근무지 경합시 중증장애인교원을 우선 전보하되, 다자녀 교사, 도서 · 벽지 등 특정 지역 근무 교사 등 별도의 우선 전보 대상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근무지 결원의 50%(1/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교원을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 희망 근무지 경합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중증장애인교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례
- 시 ·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등 현임교 최소 근무 경력을 가진 중증장애인 교원을 우선 전보한 사례
- 전보 주관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 배정을 확정한 장애인교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한 사례
- 경합 여부와 관계 없이 출 · 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교원에 한해 희망 근무지로 우선 전보한 사례

Q&A

주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문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중증장애인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우선전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보행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를 구분하는 경우는 장애인의무고용 인원 산정과 근로지원인 배치 시에만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장애정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차별금지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차별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제조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3조 및 일반논평 제8호에서도 사용자는 인사상 편의를 포함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평등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합리적 조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장애정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교원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인사상 편의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증장애인교원이라 하더라도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해 장애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보특례 등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근로자의 동등한 교직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러한 전보특례 조치는 정당한 편의 중 하나 또는 고용상의 차별금지, 고용상의 장애를 고려한 적극적 조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 ·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상 전보 특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이 전보 우선 특례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청구 제도를 안내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사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인사관리기준의 개정 등을 통해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A

질문

장애인교원이 전보 특례 등 전보 시 우대조치를 원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 여부 또는 중증장애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보내신카드 작성시 특기사항 등에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기입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별도 양식에 따라 학교장 명의의 확인서(제출서류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제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장애인 여부와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보유예

장애인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시 · 도교육청의 여건 및 전보 유예 근거 등을 고려하여 현 근무지(근무 지역 또는 근무 학교 등)의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보유예를 실시하거나 동일 근무지에 대한 근무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 · 도교육청의 인사 여건(학교급(초 · 중 · 고) 또는 학교유형별(특수학교 · 일반학교) 인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적용할 초과 근무연한을 따로 정하거나 유예 횟수를 정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의 관련 내용

Ⅰ. ~ Ⅱ. (생략)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①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중략)

4. 근무환경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 · 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 · 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의 관련 내용

▸ 제18조(전보계획) ① ~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장애교원과 다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교원 전보시 희망 근무지에 우선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의 관련 내용

> ▸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적용 사례

- 전보 유예의 횟수 또는 유예 가능 연한은 시 · 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근무지별 최소 2회 이상 또는 최소 2년 이상 전보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
- 현 근무지에 대한 전보 유예 조치가 어려울 경우 동일 인사구역 내 유예 조치를 활용(구역유예)하고, 구역유예 적용시 장애인교원이 희망할 경우 정년퇴임시까지 유예를 허용한 사례
- 중증장애인 교원이 정기전보일 현재 만 58세에 달하는 경우 동일 인사구역 또는 현 근무지에서 정년 퇴직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유예 조치한 사례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가 있는 교원이 해당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본인 희망시 근무연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보 유예 조치를 실시한 사례

(5) 기타

장애인교원에게 우선 전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전보가산점을 추가 부여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타 시 · 도 교류 또는 시 · 도 교환 · 파견 근무 시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

파견 대상자 선발 시 파견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장애인교원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의 관련 내용

> ▸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전보계획)의 관련 내용

▸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균형인사지침」 중 장애인 공무원 의사를 반영한 근무지 배치 관련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 · 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 · 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적용 사례

- 경증장애인교원 중 전보 우대 조치가 필요하나 우선 전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 전보가산점 등을 통해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
-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현 근무지에서 학교 업무 담당이 어려운 경우, 현 근무지가 원거리로 출 · 퇴근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전보요청이 없더라도 장애인교원의 신청을 통해 비정기전보를 실시한 사례(다만 비정기전보의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특수학교에 해당 장애유형을 지닌 장애인교원을 배치한 사례: 청각장애인교원이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할 때 롤모델을 제공할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는 측면에서 청각장애인교원이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 특수학교 또는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한 사례(청각장애인교원의 본인 희망이 있어야 함)

3) 승진 임용

장애인교원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임용을 말함

장애인교원은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차별 시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균형인사지침」의 승진 상에서의 차별 금지 근거

Ⅰ. ~ Ⅱ. (생략)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 · 채용, 교육 · 배치, 승진, 전보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 관련 법령: 「균형인사지침」의 승진 상에서의 고려 사항

Ⅰ. ~ Ⅱ. (생략)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생략)

2. 임용

가. ~ 마. (생략)

바. **승진**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의 관련 내용

▸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련 내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장애인교원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 평가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사건 결정례 참고)

참고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문 내용 중(2015.8.20.)

-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다리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진정인은 20xx년도 교원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 공헌도 항목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 주문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OO초등학교가 장애인 교사의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진정인인 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결정례 내용 중

(중략) 피진정인은 휴가를 덜 사용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휴가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인정사실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앞서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교원의 휴가 사용으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우려되었다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해 보거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등으로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정휴가일수에 훨씬 못미치는 5일의 휴가일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교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 ○○○ 교장이 20xx. x. xx. 퇴직을 하였고,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기타 인사 관리 등

(1) 전직 임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전문직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에 장애인교원이 응시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및 실시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장애인교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하는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및 실시 과정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휴직 · 복직

장애인교원이 재활, 재활치료, 질병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음

교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의사진단서 또는 교직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재활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재활훈련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등)로 복직 처리

복직을 위한 증빙 서류로 의사진단서 제출만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교직 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로 복직 처리가 가능함

- 요건: 장애인교원이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였을 때
-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경력인정: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만 경력 인정
- 봉급 지급: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
- 질병 휴직 신청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휴직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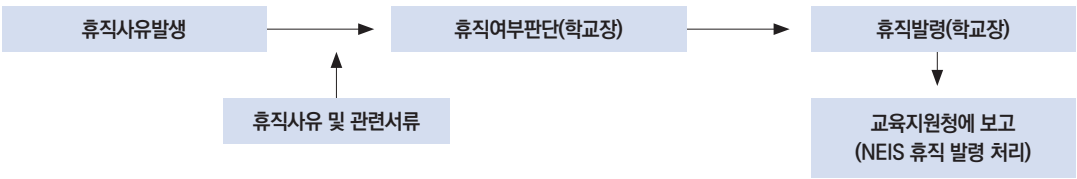

※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1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직 등: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함(당연복직)

(4) 휴가 · 병가 사용 안내

[병가 사용 안내] 각 시 ·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장애인교원이 재활치료 등 장애 관련 사항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2)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특별휴가 등의 조치]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시 · 도교육청의 재량에 의한 특별휴가 부여 가능

※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

▸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 · 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 [시행령]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 · 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10. 15.〉

03 장애인교원 업무분장 등

1) 업무분장 등에서의 고려 사항

장애인교원에게 적절한 편의지원과 업무분장 등의 직무조정을 제공한다면 장애인교원은 일반적인 교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장애 특성, 희망하는 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인교원에 대한 직무(특정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에서 제한 · 배제 · 분리하거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교원의 의사에 반한 다른 특정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됨

* 특정 업무: 특정 보직 부여, 부서 배치, 담임 · 학년 · 학급 배정, 수업 배정, 그밖의 보직 또는 업무 배정 등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보직)에서 제한 · 배제 · 분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환경 조성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편의제공 등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균형인사지침」 중 보직관리 관련 주요 내용

마. 보직관리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 · 예산 · 인사 · 감사 부서 및 실 · 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 관련 법령: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내 보직관리 관련 주요 내용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2. 직무배치 절차

- **사전에 희망보직(근무지)을 조사하고, 장애정보 및 주요경력, 업무특성과 장애유형별 직무 적합도, 장애인공무원 배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장애유형별 고려사항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보직배치시 고려사항, 함께 근무시 고려사항 등 제시

※ 관련 법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의 관련 내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각급학교는「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희망 업무를 조사함과 동시에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희망 업무 조사와 업무분장 시 고려사항, 필요한 편의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있음**
- **학교장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인사 자문과 장애인교원의 희망 업무, 업무분장 시 고려사항, 필요한 편의지원, 경력,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관련 내용



- 제34조(설치)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주요 업무별 고려 사항

(1) 수업 배정

- **장애인교원의 장애를 이유로 특정 학년 또는 교과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차별이 없도록 유의**
- **장애인교원의 담당 학년 및 교과 희망 사항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 해당 학년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업 배정**
- **수업시수 배정 시,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교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의 수업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2) 담임 또는 보직 배정

- **장애인교원의 담임, 보직교사 등의 보직 배정은 장애인교원의 희망,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특성 및 학교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장애인교원의 장애만을 이유로 담임, 보직교사 배정 등을 제한 · 배제하지 않도록 유의**

(3) 업무 배정

- **장애인교원의 업무분장 시 장애가 없는 교원과 동등하게 차별없이 균형있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교원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장애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의 용이성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희망 업무, 업무분장 시 고려사항, 필요한 편의 등의 조사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업무를 배정하도록 노력
- 장애인교원의 장애를 이유로 매년 동일한 업무만을 업무분장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며, 다양한 업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교원의 장애를 이유로 특정 업무 배정을 제한 ·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4) 순회 · 겸임 업무 담당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마련

- [순회 또는 겸임 담당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교원이 대한 순회 또는 겸임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순회 및 겸임 기관에서 장애인교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순회 또는 겸임 기관은 사전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조사하고, 적절한 편의지원을 제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순회 · 겸임 배치에 대한 유의사항] 소속 기관의 교원 중 순회 및 겸임 대상자를 정할 때는 장애인교원 중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순회 기관간 및 겸임 기관간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이동 소요시간, 이동의 편의,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순회 및 겸임 대상자를 지정 및 임용하도록 유의

참고

-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 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순회교사)를 둘 수 있음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교육공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음
  -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
  -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 · 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

03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1. 편의지원의 개념
2. 편의지원 주요 내용

01 편의지원의 개념

편의지원이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편의지원을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정의



▸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교원이 사용자(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편의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1.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 관련 내용



▸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교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장애인교원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편의지원(정당한 편의제공) 예시

-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 ·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참고

편의지원 제공 의무의 원칙

구분	원칙
사용자의 반응적 의무	• 특정 상황에서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이를 요구할 수 있고, 편의지원에 대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함 • 편의지원 제공 책임자와 장애인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례별 접근이 필요함
협상을 통한 절차 보장	• 편의지원 요구 장애인과 사용자 간 대화를 통해 어떠한 장벽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지를 규명하여야 함 • 편의지원 제공 절차는 편의지원 요구 장애인과 사용자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효과성을 고려한 지원	• 실제 제공되는 편의지원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장애인이 선호하고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것이어야 함
편의지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문제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편의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에 기반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편의지원 요구 장애인과 시의적절하게 소통해야 함 •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사유에는 재정적 비용, 가용 자원(공적 지원 포함), 사업체의 규모, 사업체에 대한 영향, 제3자의 편익,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합리적인 건강 및 안전 요건을 포함한 잠재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
사용자 부담 원칙	• 편의지원을 요구하는 장애인이 편의지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출처: 오욱찬 외(2018). 장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 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반논평 제6호에서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과 원칙" 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중)

- 장애유형 · 정도 · 성별 ·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 시설이 신축건물인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재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상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시설의 면적이 좁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처럼 구조적인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가 해외에만 있어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제공인 경우

→ 온열기, 냉장고 같은 개인용 물품을 비장애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 ·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02 편의지원의 주요 내용

1) 인적지원

(1) 유형

-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사용자)는 장애인교원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적지원은 사용자인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바우처 인력, 관련 전문인력(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속기사 등) 등의 지원인력을 장애인교원의 요구와 시 · 도교육청의 인적지원 여건 또는 편의지원 관련 계획 · 지침 · 규정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지원할 수 있음**

  - 각 시 ·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 지원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에 근거하여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교원의 지원인력 등 편의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인 임용권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간주(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결정례 참고)

참고

장애인교원의 인적지원 등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차별 진정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문 내용 중(2017.4.13.)

-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6. 9. 피진정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 주문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결정례 전문 내용 중

(중략)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략) **인사혁신처장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시 · 도교육청 또는 각급학교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지원인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자체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해당 장애인교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교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신청, 이용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지원 관련 내용

▸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 장비의 구입 · 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또한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근로지원인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교원이 필요로 하는 유형의 근로지원인을 신청, 이용할 수 있음

- 근로지원인 중 제1유형(업무보조형) 또는 제3유형(적응지도형)에 해당되는 근로지원인 활용

※ 청각장애 교원 중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2유형(의사소통형) 활용

※ 관련 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에 따른 근로지원인 유형 관련 내용

▸ 제42조(서비스 대상자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별표4] 지원유형별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지원 유형	자격기준
제1유형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1.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있는 자 중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각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이 인적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원 사례

- OO교육청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교원의 본인부담금 부담 해소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한 사례

(2) 지원 내용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인력은 장애인교원이 수업 운영, 학생 지도, 학급 또는 학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지원인력의 직무 지원 내용

참고

지원인력의 장애유형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

→ 시각장애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교수학습	- 전자문서 편집 · 검토 지원(표 그리기, 글자 · 문단 모양 편집, 오탈자 확인, 입력 오류 검토 등) - 비전자문서 작성 및 검토 지원(학생 학습활동지 작성 관찰 및 파악 등) - 대체자료 제작 지원(책자, pdf → hwp, txt 등 전자문서 형태 OCR 변환 등) -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편집 지원(학습지, PPT, 영상, 교구 등) - 학습 기자재 및 학습지 관리 지원(교구 및 기자재 구입·운반·정리하기, 학습지 인쇄·정리·수합 등) - 자료 검색 및 전반적 내용 파악 지원(오타 및 표기오류 등) - 수업 진행 상황 전달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장소 및 프로그램 선정 검색, 물리적 환경 파악, 학생 인솔 등) - 평가업무 시 지원(시험지 원안 인쇄물 오류 확인, 서술식 평가 답안 대독, 학습지 제출 매수 및 완성도 확인, 나이스 문항정보표 입력 지원 등) - 온라인 수업 운영 지원(촬영, 편집, 업로드 등)
학생지도	- 통학지도 지원(통학버스 차량 통제, 교통지도 등) - 조례 또는 종례 지원(학생 출석 확인, 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수 등) - 학생 관찰 지원(건강상태, 학습상황 등 전반적인 정보, 비언어적 표현, 교우관계 관찰 및 파악 등) - 급식지도 지원(학생 질서 관리 감독 및 촉진 지원) - 상담 준비 지원(상담자료 인쇄, 정리, 준비, 진로정보 검색 등) - 도전 행동 지도 시 지원(공격적 행동, 공간 이탈 행동, 신변자립 훈련 등) -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 지원(학생 간 싸움, 안전사고 등)
학급운영	- 시간표 관리 프로그램 조작 지원 - 학급행사 시 학생 관리 지원 - 교실 환경미화 지원(게시판 관리, 게시물 게시, 사물함, 청소도구함, 스레기통 등) - 학급 청소 관리 지원(학생 청소 완료 정도 파악 및 학생 청소 감독 및 촉진 지원)

교무행정 및 교원인사	- 문서 편집·검토·관리 지원(동의서, 회의록,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등) - 나이스 시스템 구조 및 체계 파악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점검 지원(오타 및 표기오류 검토, 기재요령 정보 탐색 등) - 학습자료 선정 및 신청 업무 시 지원 - 행사 준비 시 지원(상품 포장, 행사장 꾸미기, 현수막 설치, 무대 환경 조성, 강사 섭외 등) - 회의 자료 준비 지원(회의자료 인쇄, 정리, 배부 등) - 연수 운영 지원(연수 장소(동선, 물리적 거리, 환경 등) 파악 지원, 연수 준비 물품 검색 및 구입·관리 등 지원, 연수 자료 제작 지원)
기타	- 이동 시 지원: 교내 건물 내 이동 지원, 외부(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출장 및 연수, 학교 외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참여 등) 활동 시 이동 지원

→ 지체장애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교수학습	-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편집 지원(학습지, PPT, 영상, 교구 등) - 학습 기자재 및 학습지 관리 지원(교구 및 기자재 운반·정리하기, 학습지 인쇄·정리·수합 등) - 소근육 조작과 신체활동을 요하는 활동 및 과목에서 수업 진행 시 지원(과학, 체육, 미술 등) - 원격 수업 진행 시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지원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학생 인솔 등) - 평가업무 시 지원(학습지 제출 매수 확인, 나이스 문항정보표(OMR 답안지) 입력 지원 등)
학생지도	- 통학지도 지원(통학버스 차량 통제, 교통지도 등) - 조례 도는 종례 지원(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수 등) - 출결 관리 시 구비되어야 할 문서(생리결석, 경조사, 전염병 등) 구분 및 처리 시 지원 - 급식지도 지원(학생 질서 관리 감독 및 촉진 지원) - 상담 대장 등록 기록 및 상담일지 작성 시 지원 - 도전 행동 등 지도 시 지원(공격적 행동, 공간 이탈 행동, 신변자립 훈련 등) - 돌방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 지원(학생 간 싸움, 안전사고 등)
학급운영	- 학급행사 시 학생 관리 지원 - 교실 환경미화 지원(게시판 관리, 게시물 게시, 사물함, 청소도구함, 스레기통 등) - 학급 청소 관리 지원(학생 청소 완료 정도 파악 및 학생 청소 감독 및 촉진 지원)
교무행정 및 교원인사	- 나이스 시스템 작업 시 지원(마우스 클릭 사용 조작 많은 경우) - 문서 작성 시 지원(회의록, 경위서 등) - 신체적 활용이 많은 업무 배정 시 지원(방송실, 시험감독, 결보강, 개인정보 동의서 회수 등) - 행사 준비 지원(상품 포장, 행사장 꾸미기, 상장 배부, 현수막 설치, 다과 준비, 이름표 비치 등) - 문의 전화 상담 많은 업무 시 지원 - 연수 자료 제작 지원(PPT 제작 및 편집, 나이스 -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편집 등)
기타	- 이동 시 지원: 교내(건물 내 이동), 외부(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출장 및 연수, 취약계층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등) 등

참고

지원인력의 장애유형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

→ 청각 · 언어장애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교수학습	- 수업 중 언어적 피드백 필요 시 지원(언어적 촉구 및 모델링, 질의응답 등) - 음성 및 영상 매체 접근 및 활용 시 지원 -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원(학생 인솔 등) - 평가업무 시 지원(구술평가 등)
학생지도	- 통학지도 지원(통학버스 차량 통제, 교통지도 등) - 언어적 의사소통 진행 시 지원(상담 등) - 급식지도 지원(학생 질서 관리 감독 및 촉진 지원) - 도전 행동 등 지도 시 지원(공격적 행동, 공간 이탈 행동, 신변자립 훈련 등) -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 지원(학생 간 싸움, 안전사고 등)
학급운영	- 학급행사 시 학생 관리 지원
교무행정 및 교원인사	- 전화 업무 시 지원 - 대면/비대면 회의, 연수 참여 시 지원
기타	- 교내외 방송,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벨 울림 등에 대한 파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중증장애인교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

참고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의 지원 영역

주요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지체 · 뇌병변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서류정리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 업무 수행 관련,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시각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이동 지원 등
청각 · 언어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3) 지원 대상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인력은 장애인교원이 수업 운영, 학생 지도, 학급 또는 학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 한도: 법정근로시간 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수행업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통하여 지원시간 결정, 예산 범위 내 지원(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

구분	지원 한도	
근로지원인	1인당 지원금	• 시간당 9,160원
본인부담금	1인당 지원금 (한국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 시간당 10,992원
	장애인 부담	• 시간당 300원 • 단,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3명의 경우 130원

(4) 근로지원인 신청 절차 및 이용 안내

근로지원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방문 평가	결정 통지
장애인교원 (직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 (대표번호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서 방문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근로지원인 제공 시간 판정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근로지원인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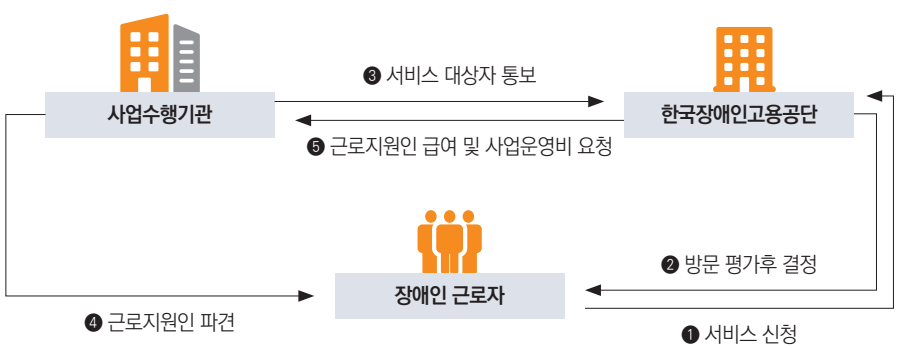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도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도 양식 활용)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활용시 고려 사항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제공 중 하나임. 장애인교원이 근로지원인을 직접 신청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의 이용 유지, 중지 또는 취소도 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인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컴퓨터 활용 능력, 수어통역, 문자통역, 속기 등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른 인적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지원인은 시 · 도교육청이 배치와 관리는 인력이 아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노무 관련 문제 발생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별 지사 및 위탁 수행기관을 통해 문의하여야 함



근로지원인 신청 관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 및 팩스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30 팩스: 0503-470-012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5 팩스: 0503-470-013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2-620-6209 팩스: 0503-470-020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전화: 031-300-0991 팩스: 0503-470-022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71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42 팩스: 0503-470-0211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부천시)	전화: 031-500-2458 팩스: 050-3470-0238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전화: 033-737-6613 팩스: 0503-470-024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제외: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1-629-6075 팩스: 0503-470-033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7 팩스: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제외: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1-983-1853 팩스: 0503-470-0341
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71 팩스: 0503-470-0351
경남지사	경상남도(제외: 양산시, 밀양시)	전화: 055-225-8092 팩스: 0503-470-0311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3 팩스: 0503-470-0321

2) 의사소통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용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기관이 생산 ·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 등 다른 학교구성원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관련 내용

▸ **제21조(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 · 제11호 · 제19호 · 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 ·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 ⑥ (생략)

▸ **제23조(정보접근 ·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한국수화언어법」에는 수어통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관련 내용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 ·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 농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수어통역 지원

- 지원 대상: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
- 지원 내용: 수어통역사를 통한 수어통역 지원, 제2유형(의사소통형) 근로지원인을 통한 수어통역 지원
- 신청 절차
  - ① 수어통역사를 통한 수어통역 지원: 장애인교원이 각급학교 및 시 · 도교육청을 통해 수어통역사 지원 요청하고, 각급학교 또는 시 · 도교육청은 지역 내 수어통역센터(부록의 기관 정보 활용)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확보하여 신청한 장애인교원에게 제공
  - ② 제2유형(의사소통형) 근로지원인을 통한 수어통역 지원: 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문자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
- 지원 내용: 문자통역지원 시스템(쉐어타이핑 등)을 활용한 지원 등
- 신청 절차: 시 · 도교육청, 각급학교가 직접 문자통역 업체와 계약하여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 ·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교사가 문자 통역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지원 사례

- OO교육청 문자통역 지원 사례
  - 문자 통역 지원 대상 교원 총 7명
  - 활용 방법
    - 교사 1인당 50시간 활용
    - 교사 1인당 5,000천원 지원(100,000원 × 50시간 = 5,000,000원),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문자통역 관련 물품(블루투스 기기 등) 구입도 가능
    - 지원 대상 교사가 직접 문자 통역 지원 업체와 연락하여 각종 연수 및 회의 시 활용

※ 참고: 쉐어타이핑 홈페이지(www.sharetyping.com)

※ 참고: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audsc.org)

의사소통 조력 지원

- 지원 대상: 뇌병변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교원
- 지원 내용: 교직 수행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지원(장애인교원의 발화 전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공되는 조력인 또는 해당 장애인교원이 지정 · 요구하는 인력을 통한 의사소통 조력 지원

3) 보조공학기기 지원

(1) 개념

장애인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교원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을 향상 · 보완하고, 교직을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지원하는 편의지원을 말함

(2) 지원 근거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교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관련 내용

▸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 ·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장애인교원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 장애인교원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 장비의 구입 · 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

▸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 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 · 장비의 구입 · 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3) 지원 내용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교원이 신청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 사례

- OO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태블릿 PC,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례

인적지원과 마찬가지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교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중 하나이므로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각 시 · 도교육청은 매년 장애인교원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수요에 근거하여 보조공학기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지원 사례

- OO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로 교부한 후, 해당 학교에서는 장애인교원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예, 모니터암, 실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센서리더, 블루투스키보드, 듀얼헤드셋 등)를 구입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한 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와 같은 지원을 장애인교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리, 유지 또는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각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교원이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유형

장애인교원에게 제공 가능한 보조공학기기의 유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활용하되, 장애인교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보장구(휠체어 등), 교육용 기자재(태블릿PC 등), 관련 장비 · 시설 · 기기도구,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로 판단하여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유형 예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지원 가능한 장애유형
정보 접근용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입력·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시각
	점자프린터	•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린터	시각
	컴퓨터화면확대 S/W 및 H/W	• 컴퓨터 화면을 고배율로 확대 가능한 S/W 및H/W	시각
	음성출력 S/W 및 H/W(TTS 등 포함)	• 텍스트 또는 웹페이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S/W 및 H/W	시각
	확대독서기	•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고배율로 확대하거나 글자 또는 배경색을 변환해주는 장치	시각
	문서인식 S/W 및 H/W	• 문자 또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S/W 및 H/W	시각
	대형 모니터	• 19인치 이상의 대형 컴퓨터모니터	시각
	스마트 TV	• 다양한 기능으로 접근성·활용성이 높고 편리한 TV	공통
	특수 키보드	• 표준화된 일반 키보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key)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변환한 키보드	시각, 지체 ·뇌병변
	특수 마우스	• 표준화된 일반 마우스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마우스의 크기, 모양, 클릭 방법 및 형태 등을 변환한 마우스	시각, 지체 ·뇌병변
	입력 보조장치	• 표준화된 일반 입력장치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 입력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틱, 키가드 등의 다양한 장치	시각, 지체 ·뇌병변
	선택장치	• 일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입출력 장치	시각, 지체 ·뇌병변
	자세보조장치	•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을 완화하고, 원시반사를 감소시키며 관절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지체
	특수 S/W	• 장애로 인한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잔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S/W	시각
	AI 음성인식 프로그램 (STT, 클로버노트 등)	• 음성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공통

	FM 시스템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소음이 많은 상황이나 원거리에서도 신호대잡음비(SNR)을 개선하여 원활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청각
	자막안경	• 대화 음성을 텍스트(자막)로 변환해주는 기기	청각
	블루투스 키보드	• 휴대폰, 노트북, PC 등의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키보드	청각, 지체·뇌병변
작업 기구용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지체·뇌병변
	경사각 작업테이블	• 경사각 조절이 가능한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지체·뇌병변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책상면이 둥글게 제작된 작업테이블	지체·뇌병변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보조공학 장치	공통
	특수작업의자	•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 완화 및 원시반사 감소, 관절가동범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의자	지체·뇌병변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 무거운 작업물을 적재하고 운송/운반하기 쉽게 보조해주는 전자동 장치	시각, 지체 ·뇌병변
의사 소통용	신호장치 (섬광 기능 장치 등)	•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	청각
	골도전화기	• 골도청력으로 음성을 전달하고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 문자전화기 음성을 문자로 대체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기	청각
	화상전화기	• 영상을 통해 수어통화를 지원하는 전화기 • 소리증폭장치 소리 입력정보를 확대 증폭하여 주는 장치	청각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AAC 등)	• 중증의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그림, 기호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장치	청각, 뇌병변
	문자통역용 모니터	• 언어적 소통 내용에 대한 문자통역이 이뤄질 때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전용 모니터	청각
	블루투스 헤드셋	• 무선으로 기기와 연결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기	지체·뇌병변
	마이크 및 스피커	• 소리를 확장하여 전달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기기	청각
사무 보조용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입력정보가 소리나 진동으로 변환되는 계산기	시각
	음성메모기	• 외부의 소리, 음성 등을 녹음·녹취할 수 있는 장치	공통
	책장넘기는 도구	• 책 페이지를 쉽게 넘기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머리, 입, 손목 등에 부착하여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고안된 보조 장치	지체·뇌병변
	수화기홀더	• 수화기를 잡거나 들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손쉽게 수화기를 잡거나 들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지체·뇌병변
	팔지지대	• 협응장애, 근력이 약화된 장애인을 위해 상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장치	지체·뇌병변
	물건집게	•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멀리 있는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손잡이 보조구	지체·뇌병변
	필기보조도구	• 손힘이 약해 필기도구를 쥘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손, 손목 등에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필기보조장치	지체·뇌병변
	원고홀더	• 책, 서류 등을 고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지체·뇌병변

차량용	운전보조	핸들봉	• 손의 근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핸들을 쉽고 편하게 회전 시킬 수 있는 장치	지체·뇌병변
		확장 스티어링	• 상지가 짧거나 회전 반경이 작은 경우 핸들 조작 보조해주는 장치	지체·뇌병변
		세컨더리 컨트롤	• 방향지시등, 비상등 크락션, 와이퍼 등을 전자식 버튼으로 조작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조작력 저감 장치	• 저속이나 정차 시에는 조작을 가볍게, 고속 주행 시에는 무겁게 조작하여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장치	지체·뇌병변
		핸드컨트롤러	• 양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 (손으로 브레이크와 악셀페달 조작)	지체·뇌병변
		좌측엑셀페달	•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치(기존 페달에 축을 달아 왼쪽으로 연결하여 왼발로 조작)	지체·뇌병변
		페달 확장	• 다리 길이가 짧은 분들을 위해 페달 길이 연장을 하여 이용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우측 턴 시그널	• 좌측 손 대신 우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의 방향지시등을 제어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경련방지플레이트	• 하체의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닿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	지체·뇌병변
		주차브레이크 개조	• 발을 이용하는 주차 브레이크에 레버를 장착하여 손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자동변속기	•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변속기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족동장치	• 양 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브레이크,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 조작 모두 가능)	지체·뇌병변
		벨트류	• 전방 및 좌우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자세유지	• 척추가 휘어있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든 체형일 때 자세를 유지하여 주는 장치	지체·뇌병변
	탑재보조	크레인	•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지체·뇌병변
		도넛형 연료통	• 도넛형 연료통 개조로 휠체어 등 이동수단의 적재 공단을 확보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승·하차보조	리프트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지체·뇌병변
		이동(회전)시트	•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지체·뇌병변
		사이드서포트	•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지체·뇌병변
		멀티리프트	•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고정장치	•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지체
		경사로(램프)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보조발판	• 차량에 탑승 시 보조발판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탑승하게 지원하는 장치	지체·뇌병변
		하이루프	•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시각, 지체·뇌병변
기타		자동문	•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시각, 지체·뇌병변
개조 또는 주문 제작		-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 장치	공통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공학기기 목록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것임

(5)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교원에게 지원하는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한 후 이를 장애인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분됨**

구분	지원 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인 제품
** 고용유지조건지원 :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인 제품



장애인교원은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참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장애인교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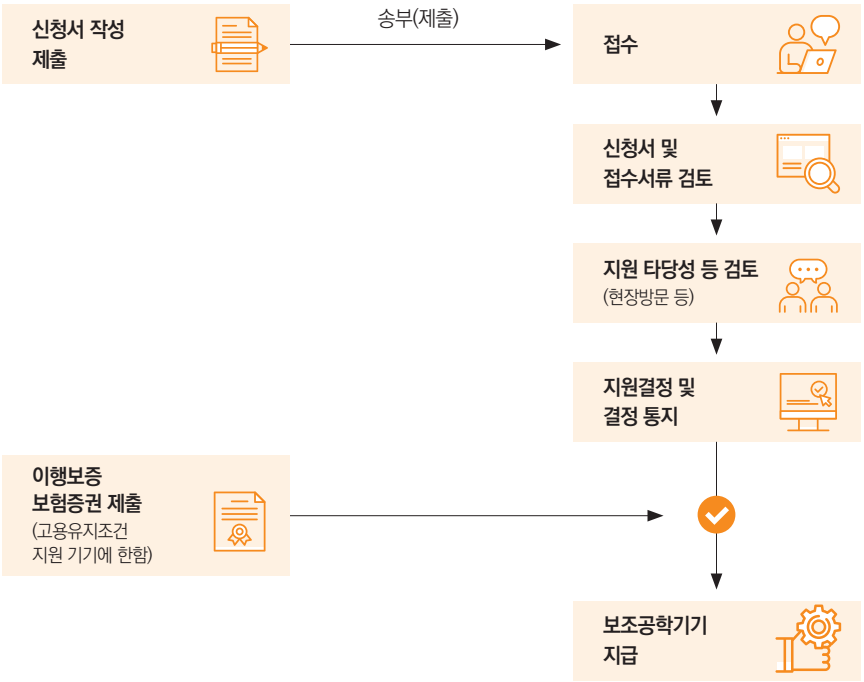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부록 서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증 사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관련 내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비고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기준 규정
제21조(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보조공학기기의 분류체계는 별표5에 따른 ISO 9999를 따르며, 구체적인 품목, 제한연수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5]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체계 1.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3. 가정생활 관련 직무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4.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5.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6.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7. 물리적 환경 요소의 제어, 개조 또는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9. 휴양과 여가용 보조공학기기	•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유형 규정
제22조(지원범위 및 한도 등)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기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지원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 대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의 한도를 1인당 1,500만원(중증장애인은 2,000만원)으로 규정 • 보조공학기기 구입 · 대여,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소요 비용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제2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서류 및 결정 절차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 ·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품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 · 확인하여 60일 이내에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고용유지조건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 · 개조 · 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로부터 지원금액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규정

4) 정보접근 지원

(1) 정보접근 지원 개념과 원칙

▌정보접근 지원이란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 · 보완하거나 재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함

▌관련 법령 상의 근거를 고려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보접근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지능정보서비스 등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장애인교원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사람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하는 정보접근 편의는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함

(2) 정보접근 지원 관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3조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용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기관이 생산 ·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 등 다른 학교구성원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 **제21조(정보통신 ·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 · 제11호 · 제19호 · 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 ·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 ·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 ⑥ (생략)

▸ **제23조(정보접근 ·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 · 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교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의 정보 접근 관련 조항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 ·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 · 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 · 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 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 ·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또한 「점자법」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수립 · 시행 및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 사용 교과용 도서의 점자로 제작 · 보급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점자법」 의 관련 조항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 ·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공공기관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 ·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 ·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 · 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제46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의 관련 조항

▸ 제46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49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음.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관련 조항

▸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 · 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 · 고령자 · 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 · 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접근 지원 내용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 인쇄물 자료의 전자문서 파일, 점자자료 및 인쇄물에 대한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글자(축소글자)자료, 점자자료, 화면 낭독 · 확대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접근성이 보장된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각종 콘텐츠 화면해설 지원 등
- 청각장애인: 보청기기, 각종 콘텐츠 자막 지원, 문자통역시스템 등

정보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비전자정보 유형(텍스트 파일(전자문서 파일), 큰 글자 또는 축소 글자 자료, 점자자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필요한 자료 유형)

- 학교 내 회의 자료, 각종 교육 및 연수 자료, 학교 업무 자료
- 시 · 도교육청 정책 · 시책 · 지침 · 매뉴얼 등 업무 자료
- 교과서, 지도서 등 수업자료
- 공문서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 모바일앱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할 전자정보 유형

- 포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 · 도교육청별 업무포털, 업무용메신저
- 홈페이지: 시 ·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학교별 홈페이지, 교육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
-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작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고

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또는 Mobile APP 접근성)

- 정보통신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Web 접근성)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Mobile APP 접근성)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의무사항임

※ 참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 관련 조항

▸ 제46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웹사이트 내 설치된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 도구, 음성 인식 도구, 키보드 오버레이 등의 보조과학기술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접근성(Sofeware Accessibility)

- 소프트웨어 접근성은 정보통신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

지원 사례

대전교육청 업무메신저 개선 사례

– 대전교육정보원, 새로워진 'Dje Talk' 개통



대전교육정보원(원장 박헌수)은 6일 기존의 업무용 메신저를 개편한 'Dje Talk'을 개통한다. 교직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인 Dje Talk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동일업무 분야 담당자들끼리 쉽게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제공하고, 업무경감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가서비스는 '수업시간 설정' 기능으로 교사의 수업 집중도 향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시간표를 Dje Talk에 설정하면 수업시간 동안 각종 알림을 꺼둘 수 있다.

이 외에도 **업무용 메신저 사용에 제약이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해 메신저 접근성을 향상, 기존 불편함을 해결했으며 기관에서 사용 중인 아날로그 방식의 재실등(燈)을 디지털화해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했다.** 또 시교육청만의 특화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해 한층 더 유쾌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 원장은 "Dje Talk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교직원의 소통·협업·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톡톡(talk)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2019년 11월 5일

5) 편의시설 지원

(1) 편의시설 지원의 개념 및 종류

편의시설 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근거)를 말함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임

※ 관련 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 1. 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편의시설 지원은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직무 수행 장소까지의 출입가능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등 사용자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임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지원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아래 생략)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편의시설 지원 관련 내용

▸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아래 생략)

편의시설의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관련 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종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2) 편의시설 지원 내용

교육기관이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제거)
-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휴게시설)

이러한 편의시설 유형 중 교육기관이 주로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음

–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보행 안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강의실 및 기타시설,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작업대, 피난시설 등

참고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

시설 유형	확충해야 할 내용	관련 사진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의 교행이 가능한 폭은 1.8m 이상을 확보해야 함	
보행 안전	• 보행로 바닥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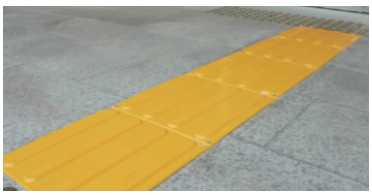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최소 1면 이상은 의무설치 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시설 유형	확충해야 할 내용	관련 사진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출입구와 접근로 바닥의 단차는 0.75m 이하로 하고, 전동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1.2m이상의 유효폭 경사로를 설치함. 또한 진입구간은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이 없이 설치하되, 바닥면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경사로 1/18 이하로 함	
강의실 및 기타시설	• 교실 면적은 50㎡ 이상을 갖추어야 함. 또한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 설치, 투시 가능하여 반대편을 볼 수 있게 설치함. 휴게실과 상담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체육실, 체험실, 보건실, 대기실, 자료실, 식당 등은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복도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바닥은 높이차가 없도록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함. 복도 양 측면에 연속 손잡이를 설치해야 함	
통행이 가능한 계단	• 계단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디딤판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해야 함. 바닥표면은 미끄럼방지설비를 하고,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 1.2m 이상, 계단참 및 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 기준 1.5m 이상이어야 함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공간은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함.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 승강기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함. 또한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3m이상으로 함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함. 또한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해야 함 • 장애인용 화장실 소변기는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수직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해야 함	

시설 유형	확충해야 할 내용	관련 사진
	• 화장실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며, 화장실 거울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음	
작업대	•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피난시설	•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고,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함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설비 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점형블록, 선형블록,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비상벨 설비,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피난구유도등, 종소리경광등 등

참고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고려 편의시설 · 설비 고려 사항

고려해야 할 시설 설비 환경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이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함.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인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함.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 •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설비 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함

지원 사례

일반학교 근무 시각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편의시설 및 관련 기기 지원 사례

1. 교육청: OO교육지원청
2. 사업명: 포괄사업비사업
3. 주무 부서: OO국 OO과
4. 사업 성격
   가. 목적: 학교 현안사업 지원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나. 선정 기준: 시급성, 위험성이 있는 재난위해시설보수, 학교현안, 안전분야(교사 통행 안전 등)
   다.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 학교당 연1회
5. 편의시설 지원 내용: 교내 점자블록 설치 및 점자정보단말기 구입

6) 근무환경 개선 지원

(1) 적절한 근무 장소 및 휴게 공간 제공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교원 등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하여야 함

장애인교원이 근무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근무 시설 설비 등 편의를 설치 및 제공할 수 있음

-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지원 관련 내용

▸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 ·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지원인력 또는 근로지원인 등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교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및 휴게 공간이 가까운 곳을 장애인교원의 근무 장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휴게 공간 및 화장실은 장애인교원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출입구의 폭을 휠체어의 폭보다 넓게 하고, 턱을 없애서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 관련 내용

▸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2) 근무 시간 조정

장애인교원의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차출근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병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관련 내용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7)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내부직원이 직접 진행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교육청 및 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학교구성원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내용

▸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8)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 **각 시 ·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 · 운영하여야 함**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4조의2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관련 조항 주요 내용

▸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편의지원 제공의 협의와 조정,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개선, 장애인교원의 직무 적응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장애인지원관 담당 업무 관련 조항 주요 내용

▸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5. 28.〉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04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부 록

〈부록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부록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부록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01 중증장애인 관련 기준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 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

  -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판정 기준

① 지체장애

- 절단장애
  - 상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절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

•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관절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

• 상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②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③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④ 청각장애

- 청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⑤ 언어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지적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⑦ 정신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 의욕 ·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⑧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⑨ 신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⑩ 심장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⑪ 호흡기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⑫ 간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⑬ 안면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⑭ 장루 · 요루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⑮ 뇌전증장애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의 구체적 기준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가. 절단	1) 팔 절단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몸쪽손가락뼈 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다리 절단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	1) 팔 관절	가) 두 팔 각각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2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라)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바)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2) 다리 관절	가) 두 다리 각각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범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사람
	다. 기능	1) 팔 기능	가) 두 팔을 마비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 기능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라. 척추	1) 목뼈와 등 ·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사람	

뇌병변장애	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마비와 관절오그라듦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Modified Bathel Index)가 69점 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안면장애	가. 노출된 안면부의 9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호흡장애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 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사람
간장애	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이면서 과거 2년 이내에 간성뇌증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가. 장루(창자샛길)와 함께 요루(요도샛길) 또는 방광루(방광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신체기관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루(창자샛길) 또는 요루(요도샛길)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창자피부샛길)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다.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공장샛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뇌전증장애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 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정신장애	가.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 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전반적기능 수준(Global Assessment Function) 척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비고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별표1에 따른 기준

[별표 4]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

1. 지체장애인

가. 다리 절단장애(하지 절단장애)

장애 상태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다리 관절장애

장애 상태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다. 다리 기능장애

장애 상태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라. 척추장애

장애 상태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2. 청각장애인

장애 상태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간장애인

장애 상태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4. 안면장애인

장애 상태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 장루 · 요루장애인

장애 상태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6. 그 외 지체장애인(상지 절단장애, 상지 관절장애, 상지 기능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의 중증장애인 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따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관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

장애유형	대상기준	판정기준	
지체장애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절단 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 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기능 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④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척추 장애	①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시각장애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호흡기장애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간장애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장루·요루 장애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장애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자폐성장애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정신장애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02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관련 기준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4 서식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중증여부 [ ]중증 [ ]경증	
	현 직장 취업일자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예 [ ]	아니오 [ ]
			기기명	

사업주 동의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담당자명	휴대전화:
		연 락 처 ( ) -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근로자 수	
	업종(주된 생산품)	장애인 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 대 표 (서명 또는 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내용	
담당 직무 (핵심직무 위주로 기술)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
(수행시간:)	
(수행시간:)	
(수행시간:)	
(수행시간:)	
(수행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요청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결정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일부가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이력, 재직정보, 급여정보,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정보 등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3년	□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항목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자격(변동)확인**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3년	□
장애종류 · 등급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동의일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보유·이용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조사·연구, 개인정보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상담

(제공제한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평가, 지원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및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회보험 관리주체,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중복수혜자 조회 등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보유기간 동안	□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제공 동의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는자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항목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이용목적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및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회보험 관리주체,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주민등록번호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중복수혜자 조회 등	대상자격 유지기간	□
		• 장애종류 · 등급			□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수혜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장애인고용공단의 각종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①융자·무상지원 ②보조공학기기 지원 ③근로지원인 서비스 ④취업알선 지원금 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신청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신청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고용부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별지8 서식 (앞쪽)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① 신청인 (사업주 또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체명 (기관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근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근로자인 경우)		
②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 사			
		사업장			
	연락처	담당자명		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장 애 인 고용의무		1.적용 2. 비적용	업종(주생산품)	
	상시근로자수		명	장애인 근로자수	명
③ 이용 장애인	별지 참조				
④ 신청기기	별지 참조				
⑤ 확인 사항	신청 기기와 유사한 용도의 정부지원금 또는 기기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안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 합리적 사유없이 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기기를 손망실한 경우 물품의 잔존가액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구비 서류	1.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선전상망 등록시 대체 가능) 1부 2.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자	처 리 기 관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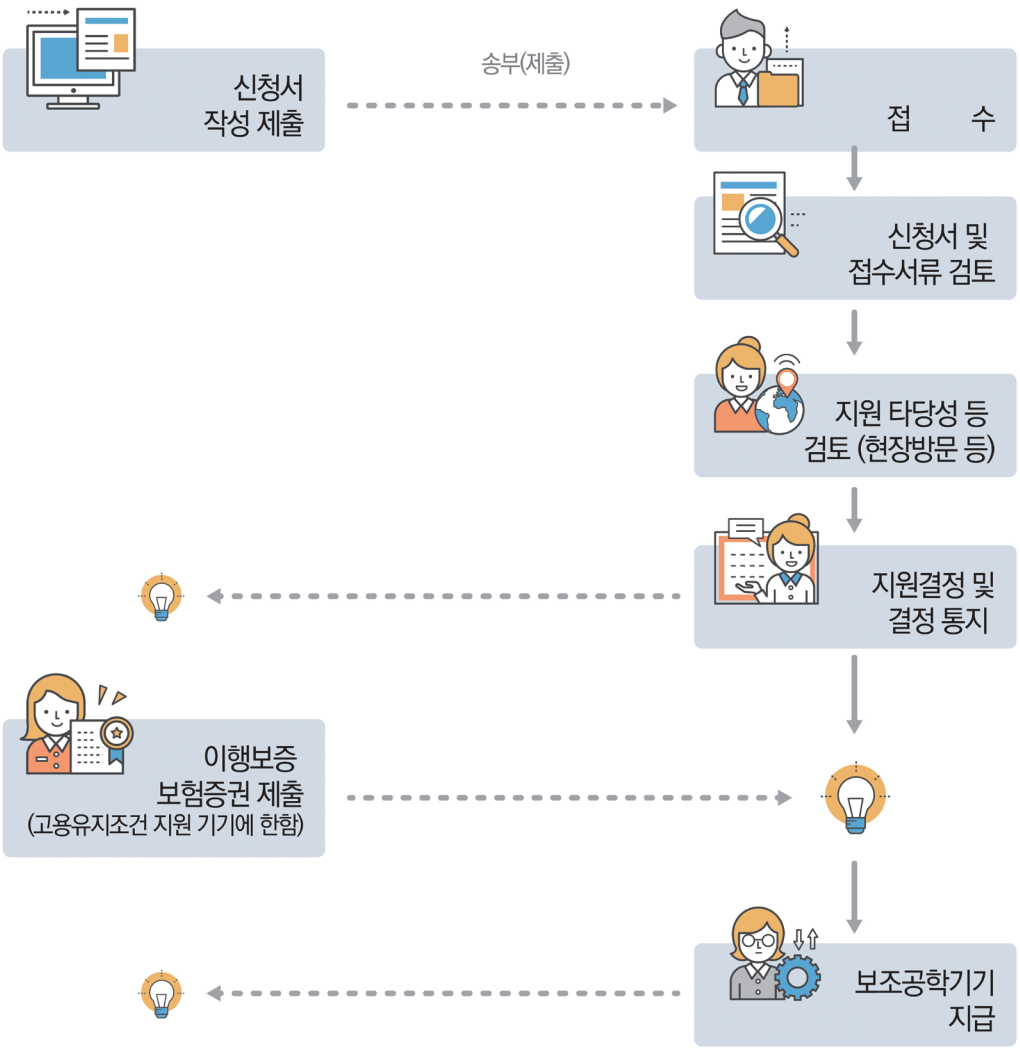

※ 기재요령

① ~ ②은 보조공학기기 신청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 ④는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지원희망기기는 지원품목 및 제품 목록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⑤확인사항은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신청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기기이용 장애인 및 신청기기 현황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 애 유 형	중·경증 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부위	
	장 애 상 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 애 유 형	중·경증 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부위	
	장 애 상 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 애 유 형	중·경증 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부위	
	장 애 상 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 애 유 형	중·경증 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부위	
	장 애 상 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 무	
	장 애 유 형	중·경증 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부위	
	장 애 상 태			입사일 (입학일)	
	업무내용 및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별지 제20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사 업 체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2.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로 사용하지 않겠음

3.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감가상각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 상환하겠음

4.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고용유지 약정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상환하겠음(무상 지원 대상자는 제외)

위의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일부가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3년**	□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항목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이용 목적	고유식별번호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자격(변동)확인**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3년**	□
장애종류 · 중·경증 여부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동의일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보유·이용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조사·연구, 개인정보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상담·평가

(제공제한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보조공학기기 납품 배송 • 중복수혜자 조회 등	• 보조공학기기 신청일부터 • 사후관리기간까지	□

▪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제공 동의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는자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항목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의 이용목적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주민등록번호	• 보조공학기기 납품 배송 • 중복수혜자 조회 등	대상자격 유지기간	□
		장애종류· 중·경증 여부			□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수혜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서명)

03 장애인교원 관련 유관기관 정보

1.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업무 담당(지원) 부서 및 연락처

순	시·도교육청명	담당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2-399-9154
		중등교육과	02-399-9490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중등)	051-860-0434
		교원인사과(초등)	051-860-0446
3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63
4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32-420-8410
5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62-380-4335
6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42-616-8265
		중등교육과	042-616-8326
7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52-210-5243
		중등교육과	052-210-5484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044-320-2313
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초등)	031-249-0155
		교원인사과(중등)	031-249-0230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33-258-5422
		중등교육과	033-258-5632
11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인사팀	043-290-2636
		중등인사팀	043-290-2646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24
13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64
14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61-260-0393
		중등교육과	061-260-0447
15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8
		중등교육과	054-805-3379
16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49
		초등교육과	055-268-1126
		중등교육과	055-268-1174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064-710-0332
		중등교육과	064-710-0312

2.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유관기관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02-3433-0600	https://www.koddi.or.kr
복지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66-0313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https://www.ktcu.or.kr
사학연금공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061-338-0000	https://www.tp.or.kr/tp-kr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1588-0075	https://www.comwel.or.kr
국립재활원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02-901-1700	http://www.nrc.go.kr
교원치유센터 (한국교육개발원)	사업내용	전문인력(상담사, 변호사 등) 및 시설을 확보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 운영 관련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1899-9876	https://forteacher.kedi.re.kr

3. 교원단체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 중구 남대문로5길 47 로컬스티치 소공2호 903호	070-4131-3355	https://khudt.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	02-2670-9300	https://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0-5500	https://www.kfta.or.kr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2층	02-522-8130	https://www.kftu.net

4. 편의지원 유형별 관련 기관, 시설 연락처

1) 인적지원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사업내용	장애인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온라인구인구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등),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1588-1519 031-728-7001~3	https://www.kead.or.kr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사업내용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에 약 200여 개 운영 ☞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 운영 관련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서울 금천구 벚꽃로 234	전화 02-6925-0175	http://www.17nsl.com
		문자·영상전화 010-5846-0175	
		씨토크 070-7947-0700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9, 501호	02-313-6222	http://kasli.co.kr
소리를 보는 통로 (소보로)	사업내용	말소리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905호	1661-0552	https://www.sovoro.kr
손말이음센터	사업내용	문자 중계 서비스, 영상 중계 서비스, 발화 청취 가능자용 서비스, 107 음성전화 중계, 원격 수어통역 서비스 등 통신중계 서비스 지원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46 2층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F	107 02-6943-2435	https://107.relaycall.or.kr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내용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인식개선교육 진행, 장애당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 309호 (서울혁신파크)	02-2038-3653	https://audsc.org
씨토크 커뮤니케이션즈	사업내용	커뮤스테이션, 메디스테이션과 같은 솔루션 서비스, 농아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39	070-7945-1010	https://www.iseetalk.co.kr

2) 보조기기 지원 관련 기관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앙보조기기센터	사업내용	17개 시·도에 있는 보조기기 관련 센터(보조기기 센터, 수리센터)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 시·도별 운영 관련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1670-5529	https://www.knat.go.kr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내용	홈페이지 접속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절차, 보급 품목, 보급 업체, 보조기기 신청 등과 관련된 정보 파악 및 수집 가능		
	대구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41068)		1588-2670	https://www.at4u.or.kr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04520)			
	제주 NIA 글로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63568)			

3) 편의시설 지원 관련 기관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02-2289-4343	http://www.atac.or.kr



4) 이동지원 관련 기관

지역		전화	명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1600-4477 02-2092-0055	서울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https://kbucall.org
		1588-4388	장애인콜택시	http://calltaxi.sisul.or.kr
부산광역시		051-583-8000	자비콜(바우처 콜택시)	
		051-466-8800	두리발	http://www.duribal.co.kr
		051-850-4646	마마콜	
대구광역시		1577-6776 013-3366-2214 (청각장애인용)	나드리콜	https://nadrihome.dgsisul.or.kr
인천광역시		1577-032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https://www.intis.or.kr
광주광역시		1668-2222	새빛콜	http://www.gjtsc.com
대전광역시		1588-1668	사랑나눔콜	https://www.djcall.or.kr
울산광역시		054-777-2811	부르미	https://www.usdws.or.kr
세종특별자치시		1899-9042	세종 누리콜	https://nuricall.sctc.kr
경기도	김포시	1899-200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https://www.guc.or.kr
	고양시	1577-590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https://calltaxi.gys.or.kr
	과천시	02-502-941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광명시	02-2688-258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광주시	1666-663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남양주시	031-592-7150	장애인복지관	
	동두천시	031-862-109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부천시	1588-3815	부천복지택시	
	성남시	1577-115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시흥시	031-488-6822	희망네바퀴	
	수원시	031-253-5525	한아름콜	
	안양시	031-389-5200	착한수레	
	안산시	1588-5410	하모니콜	
	여주시	1522-279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안산시	1588-5410	하모니콜	
	오산시	031-378-781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용인시	1588-658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안성시	031-274-805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양주시	031-861-997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평택시	031-651-470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의정부시	1577-2515	행복콜	
	이천시	1899-0017	행복드림	
	의왕시	031-462-825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파주시	1599-619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하남시	031-795-2701	나눔콜센터	
	화성시	1588-067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연천시	031-834-664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양평시	1899-8268	행복콜	
강원특별자치도		1577-2014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1588-8488	해피콜	
	충주시	043-857-616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옥천군	043-733-758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080-257-1004	천사콜	
	증평군	043-836-462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음성군	043-883-2908 043-872-680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단양군	043-422-129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충청남도		1644-5588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통합	
전라북도		063-227-0002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http://brmcall.co.kr
전라남도		1899-1110 061-287-8340~1, 5	전남이동지원센터통합	https://www.doumcall.kr
경상북도		1899-7770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	http://brmcall.co.kr
경상남도		1566-4488	경남장콜(통합운영)	
제주특별자치도		1899-6884	제주장콜	http://www.jejuhappycall.com

※ 추가 정보는 각 시·도 혹은 시·군·구 지역별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을 참조

5) 웹접근성 지원 관련 기관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웹 접근성 연구소	사업내용	웹 접근성 개요, 법과 제도, 장애인 웹사이트 이용 이해, 웹 접근성 관련 전문 교육 및 세미나 등에 대해 안내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053-230-1388	https://www.wah.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업내용	정보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넷 상의 각종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 및 사용편의 보장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1층 1121호		02-973-0073	http://www.kwacc.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내용	사이버침해대응, 디지털·보안산업		
	[나주본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1433-25	https://www.kisa.or.kr
	[서울청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IT벤처타워			
웹발전연구소	사업내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평가/컨설팅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722호		02-710-9685(9963)	http://www.smartebiz.kr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 장	신진용
기획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정상명
		교육연구사	신인철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 수	김기룡
		연구원	손예은, 김한나
검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서은주, 이형주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남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정관녕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보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준수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태환, 이정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선민영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최혜윤, 송재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배봉길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노태희, 정미연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이정림
	전라북도교육청	주무관	양신규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기명진
		주무관	최성혜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장신일, 권민석
	경상남도교육청	주무관	윤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박상현, 이윤수
	중부대학교	교 수	나경은
	단국대학교	교 수	김원호
	대구대학교	교 수	박경옥
	오클라호마인문과학대학교	교 수	황윤재
	제주대학교	교 수	연준모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주언
	신명중학교	교 사	김헌용
	서울정민학교	교 사	배성규
	안산신길초등학교	교 사	박병찬
	신상중학교	교 사	편도환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 사	최 별
	순천공업고등학교	교 사	이준수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발행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17개 시 · 도교육청

디자인 경성문화사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안내서